



2024학년도 시흥가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지혜롭고 건강하게
더불어 살아가는
시흥가온교육

(14996)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33

담당교사 364-1815

교무실 031)364-1700~2

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안내의 말씀은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.

지혜롭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시흥가온교육

2024학년도 시흥가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학교운영위원회 후 확정안

제정 : 2020.09.10.(신설학교 개교)

개정 확정·공포·시행 : 2022.03.0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 의거 시흥가온초등학교(병설유치원 통합)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이 회는 시흥가온초등학교(병설유치원 통합)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 라 하고 시흥가온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제3조(위원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6명, 학교장(당연직)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(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학부모대표1명, 교원대표1명 유치원 운영위원 2명을 별도 포함하여 운영한다.)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, 제34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58조제1항

학생수	위원정수	일반학교			비고
		학부모위원(40~50%)	교원위원(30~40%)	지역위원(10~30%)	
1,000명 이상~	13명	6명	5명	2명	유치원위원 별도 2명 (교사, 학부모대표 각 1명)

제4조(선출관리위원회)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
-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이내 인원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⑤ 학부모 및 교원 **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될 수 없다.**

제5조(위원의 선출)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.

※ 학부모위원 정족수 이상일 경우 : 가정통신문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선출관리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.

-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- 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,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 투표 당선한다.
-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-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
제6조(위원의 선출시기)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7조(보궐선거)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간으로 한다.

제3장 회의운영 등

제8조(서류제출 요구) ①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
제9조(회의 등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4월과 9월 연2회 개최한다.
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0조(회의참관)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의2(건의사항 처리) ①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.
② 건의 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③ 심의 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.
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 ①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
제12조(질서유지)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13조(공청회)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·학부모·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·일시·장소·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
제14조(운영 경비) 위원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
제15조(회의운영 규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22.03.01.)로부터 시행한다.

시흥가온초등학교장 김기봉

❖ <http://www.gaon.es.kr>→알림마당→가정통신문 링크❖